



제규정 관리 규정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|
| 규정 번호 | 2-1-4 |
| 제정일자 | 2001.03.01. |
| 개정일자 | 2022.03.31. |
| 책임부서/팀·계 | 기획처 |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제규정의 제정, 개정,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제규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7.04.19.개정> <2019.11.14.개정>

제2조(정의) ① 이 규정에서 “제규정”이라 함은 관계법령 및 정관과 학칙에 준거하여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성문규범을 말한다. <2017.04.19.개정> <2019.11.14.개정>

② 본 대학 제규정류의 구분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 “학칙”이라 함은 본 대학의 운영 및 학사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문서를 말한다. <2019.11.14.개정>

2 “규정”이라 함은 본 대학의 조직 및 교직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업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및 절차를 정한 체계적인 규범문서를 말한다. <2019.11.14.개정>

3 “시행세칙”이라 함은 학칙 및 규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한 체계적인 규범문서를 말한다. <2019.11.14.개정>

4 “운영지침”이라 함은 제2호, 3호에 준거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교적 부분적이거나 잠정적인 성격을 갖는 내부시행 문서를 말한다. <2019.11.14.개정>

제3조(효력순위) 제규정간 상하의 효력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칙
2. 규정
3. 시행세칙
4. 운영지침 <2019.11.14.개정>

제4조(적용의 예외) ① 본 대학에서 시행하는 제규정의 제정, 개폐, 운용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 및 정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.

② 각 부서에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운영지침의 경우 이 규정의 입안, 제정 및 개폐 절차와 상관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. 단, 대학 운영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규정심의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 <2019.11.14.개정>

제5조(제규정의 편성) 제규정에는 다음의 각 호가 구비되어야 한다. 다만, 제규정의 내용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폐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.

1. 총칙 : 규정의 목적, 적용범위, 용어의 정의 등 총괄적인 사항
2. 본칙 : 기본사항 또는 지침, 절차 등
3. 부칙 : 시행일,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, 기준규정과의 관계, 규정의 개폐 절차, 효력기간(한시 규정의 경우) 등 <2009. 2. 9 개정> <2017.04.19.개정> <2019.11.14.개정>

제6조(제규정의 형식) ① 규정의 항목구분은 장, 절, 조, 항, 호, 목의 순으로 한다.

② 장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절은 장단위 일련번호를 부여하며, 조번호는 장, 절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.

③ 규정조문의 내용을 세분화할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.

1. 항의 표시 : ①, ②, ③,
2. 호의 표시 : 1, 2, 3,
3. 목의 표시 : 가, 나, 다,

④ 부칙규정은 제1조, 제2조, 제3조 ……로 표시하되 그 규정조항이 1개일 때에는 번호를 생략한다.

⑤ 사용문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래어를 훈용할 수 있다. <2017.04.19.개정> <2019.11.14.개정>

제7조(별표사용) 별표, 서식 및 보기는 부칙 다음에 기재한다. <2017.04.19.개정> <2019.11.14.개정>

제8조(입안) ① 제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 입안은 업무소관부서에서 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기획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(2021.08.20. 개정)

② 기획처는 필요한 경우 업무소관부서의 협조를 얻어 입안하거나 업무 소관부서에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.(2021.08.20. 개정)

③ 제규정(안)이 2개부서 이상에 관련된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기획처는 제출된 제규정(안)에 대하여 내용의 타당성 및 효율성과 상위 제규정에 저촉, 기존 제규정과의 상치 및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소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수정할 수 있다.(2021.08.20. 개정)

⑤ 제규정(안) 입안의 의견수렴은 대학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7일 이내로 공지하며, 필요한 경우 단축 할 수 있다. <2017.04.19.개정> <2019.11.14.개정>

제9조(제정 및 개폐) ①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규정 중 다음의 규정은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정, 개폐한다.

가. 직제에 관한 규정

단. 처단위 이상의 조직 및 부설기관을 제외한 하부조직은 제외한다.

나. 교(직)원의 인사,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규정

다. 교비에 의한 예산,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규정

2. 제1호에서 규정한 제규정을 제외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 폐안은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정, 개폐한다. 다만, 운영지침은 총장의 결정에 따라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제규정의 효력은 총장의 공포에 의하여 시행한다. <2017.04.19.개정> <2019.11.14.개정>

제10조(관리) ① 기획처는 제정 및 개폐된 제규정을 제규정 대장(별지 제2호 서식)에 등재하고 그 원본은 보존하며, 시행일자를 명기한 사본을 즉시 해당 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.

(2021.08.20. 개정)

② 기획처는 제정 및 개폐된 제규정을 대학정보통신망에 공지해야 한다. <2017.04.19.개정> <2019.11.14.개정> <2021.08.20. 개정>

제11조(시행일) 제규정의 시행일은 별도 정한 사항이 없는 한 그 시행일로 한다. <2019.11.14.신설> <2022.3.10. 개정>

제12조(유권해석) 제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의 유권해석은 업무소관부서장의 자문을 받아 총장이 행한다. <2019.11.14.신설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제정 및 개폐된 규정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 및 개폐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규정류 관리 주관부서는 이 규정이 정하는 체제와 형식에 벗어난 규정은 이 규정이 정하

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< 별지 제1호 서식 >

규정입안서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. 규정명 | | | |
| 2. 부서명 | | | |
| 3. 입안형태 | 제정 () 전부개정 () 일부개정 () 폐지 () | | |
| 4. 개정사유 | | | |
| 5. 주요내용 | | | |
| 6. 참고사항 | 관련규정 | | |
| | 관련 행정부서 합의 | 해당 사항이 없으면 “해당사항 없음”으로 작성 | |
| | 담당자 | | |
| 불임 : 제정안 1부 또는 개정안(신·구조문대비표) 1부. | | | |
| 20 년 월 일 | | | |
| 입 안 부 서 | | 관 련 부 서 | |
| 소속 : | | | |
| 직위 : | | | |
| 성명 : | (인) | | |

기획홍보처장귀하

< 별지 제2호 서식 >

제 규정류 대장

※ 구분 : 제정 또는 개정